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간 요율격차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코자 함.

○ 수수료 징수방법을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업무가 경북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련한 수수료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 개선 (제6조)**

- 제증명 등 수수료의 환불금지 규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 개선 -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선사항(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 **수수료의 감면 등 범위 확대(제7조)**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 추가

○ **법령개정 등에 따른 수수요율 변경 및 삭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관한 사항 조정 (별표1)
-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개설신고 20,000원 → 40,000원
 - 개설신고사항 변경 10,000원 → 20,000원

○ **개별법령개정에 따른 권한위임 (도지사 ⇒ 군수)**

⑥ 주유소·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신설〉**
⑦ 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대체연료 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신설〉**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 :
도 세정과-9781(2009.11.04)

○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

5. 입법예고(2009. 11. 24 ~ 12. 13)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예산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성주군 조례 호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생략) <신 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인감증명	1 통	600	
②인감의 개인신고	1 건	600	
2. 병적에 관한 증명			
①병적증명 〈삭 제〉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삭 제〉〈2008.3.6〉			
②부양사실 증명	1통	300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영업주	1 통	500	
②중소기업자	〃	500	
③광업·공업·상업	〃	500	
④농가·비농가	〃	200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납세필 및 등록필	1 통	300	
②생산실적	〃	300	
③수출실적	〃	300	
④납품실적	〃	300	
⑤건물사용	〃	300	
⑥공장 원료수입	〃	300	
⑦분배농지 상환완료	〃	300	
⑧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	300	
⑨공장등록증명 〈개정 2008.3.6〉	1통	1,000	
⑩실수요자증명	〃	300	
⑪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1 통		
· 가소용량	〃	3,000	
· 확정소요량	〃	1,000	
⑫시설보유증명	〃	300	
⑬(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 통	300	
⑭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미분배농지	1 통	300	
②공부외 등·초본 교부	〃	300	
· 대장문서	〃	500	
· 토지도면	〃	700	
· 건물도면	〃	500	
③지적공부 열람			
· 대장	1필지	300	
· 도면	〃	400	
④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 건	100	
7.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 필지	5,000	
②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400	
③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칼라 또는 도면 첨부 시)	〃	1,500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	첨부도면 1매(21㎝×17㎝)당	300 가산	
④환지예정지 분할	1 필지	300	
⑤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300	
⑥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300	
⑦체비지 분할 신청	〃	300	
⑧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⑨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	
⑩개별공시지가확인서〈신설 2007.1.3〉	1필지당	800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납세증명〈삭 제〉			
②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③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 통	300	
②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300	
③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	
④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	300	

구 분	기 준	요 액	고
⑤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 통	300	
⑥보상금 지불명령	〃	300	
⑦면세용도 물품증명	〃	300	
⑧삭제 〈2005.7.28〉			
10. 주택에 관한 증명			
①철거사실 증명	1 통	300	
②공(사)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300	
11. 기타 제증명			
①수산업에 관한 증명	1 통	300	
②화재증명	〃	500	
③소방시설 완비 증명	〃	500	
④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	
⑤외국인등록표등본	〃	300	
⑥민사소송 제524조의11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1 건	300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①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 건	1,000	
②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	500	
③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개정 2008.3.6〉	〃	신규5,000 계속3,000	
④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	〃	500	
⑤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 매	50	
⑥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 건	500	
⑦중개업등록신청시〈개정2008.3.6〉			
- 법인인 중개업자	1 건	30,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20,000	
⑧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 법인인 중개업자	1 건	5,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2,000	
⑨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	5,000	
2. 산림관계			
①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 건	500	
②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신청	〃	500	
③개간허가증 교부	1 건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농수산관계			
①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 매	200	
②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 건	500	
③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	500	
④도축검사수수료			
가. 소, 말	1 두	400	
나. 돼지, 양	〃	80	
다. 닭, 오리	100두	150	
라. 칠면조, 거위	10 두	40	
마. 메추리, 비둘기	100두	100	
바. 개, 사슴	1 두	20	
사. 토끼	10 두	40	
⑤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설 2008.3.6〉	1건	3,200	
⑥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신설 2008.3.6〉	〃	3,200	
⑦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신설 2008.3.6〉	〃	4,000	
⑧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신설 2008.3.6〉	〃	3,200	
⑨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신설 2008.3.6〉	〃	3,2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 건	1,000	
②공업단지 지정승인	〃	1,000	
③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	1,000	
④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500	
⑤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	1,000	
⑥ 주유소 · 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신 설〉	〃	**20,000**	
⑦ 일반판매소 · 용제판매소 · 대체연료 판매소 신고〈신설〉	〃	**10,000**	
5. 건설관계			
①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 건	500	
②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③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채취허가	〃	점용료의 1/1,000	제외
④기타공유수면의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	점용료의 1/1,000	
⑤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⑥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 건	1,000	
⑧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	1,000	
⑨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 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100	
⑩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 건	1,000	
⑪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신청	〃	500	
⑫공(사)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	
⑬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	
⑭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500	
⑮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	
⑯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500	
⑰체비지 소유자 확인	〃	500	
⑱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	500	
⑲건축물관리대장 등본초과	1 매	300	
⑳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1 당	100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1 건	점용료의 1/1,000	
6. 보건, 사회관계			
① 삭제 〈2007.1.3〉			
② 삭제 〈2007.1.3〉			
③ 삭제 〈2007.1.3〉			
④ 의료기관개설신고〈신설 2007.1.3, 개정 2008.3.6〉	1건	40,000	
⑤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신설 2007.1.3, 개정 2008.3.6〉	〃	20,000	
⑥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신설 2007.1.3, 개정〉	〃	**40,000**	
⑦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신설 2007.1.3, 개정〉	〃	**20,000**	
⑧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신설2007.1.3〉	〃	1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⑨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신설2007.1.3〉	1 건	10,000	
⑩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신설2007.1.3〉	〃	10,000	
⑪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신설2007.1.3〉	〃	10,000	
⑫숙박업 신규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 호텔업	1 건	140,000	
○ 휴양콘도미니엄업	〃	140,000	
○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	〃	50,000	
○ 여인숙업	〃	10,000	
⑬숙박업의 신고			
○ 호텔업	1건	70,000	
○ 휴양콘도미니엄업	〃	70,000	
○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	〃	25,000	
○ 여인숙업	〃	5,000	
⑭목욕장업 신규 영업신규(지위승계 포함)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1건	30,000	
○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복합목욕장업)	〃	80,000	
⑮목욕장업 변경신고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	15,000	
○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복합목욕장업)	〃	40,000	
⑯유기장업 신규 영업허가(지위승계 포함)			
○ 컴퓨터게임장업	〃	40,000	
○ 종합유원시설업	〃	80,000	
○ 기타 유기장업	〃	40,000	
⑰유기장업 변경허가			
○ 컴퓨터게임장업	〃	20,000	
○ 종합유원시설업	〃	40,000	
○ 기타 유기장업	〃	20,000	
⑱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규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	10,000	
⑲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	5,000	
⑳세척제제조업 신규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	20,000	
㉑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	1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㉒공중위생업소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000	
㉓이·미용사 신규 면허신청	〃	10,000	
㉔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5,000	
㉕공중이용시설 신규신고(지위승계 포함)	〃	20,000	
㉖공중이용시설 변경신고	〃	10,000	
㉗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10,000	
㉘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	1,000	
㉙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	500	
㉚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500	
㉛묘지개장 허가신청	〃	500	
㉜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500	
7. 문화공보관계			
①공연자 등록신청	1 건	2,000	
②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300	
③공연장 설치허가			
가. 공연장	〃	10,000	
나. 가설 공연장	〃	3,000	
다. 임시 공연장	〃	500	
④공연장 증축허가			
가. 공연장	〃	5,000	
나. 가설 공연장	〃	1,500	
다. 임시 공연장	〃	150	
⑤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	300	
⑥각본 등 심사신청	〃	1,000	
⑦공연장 양수신고	〃	500	
⑧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	6,000	
⑨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신청	〃	2,000	
⑩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	500	
⑪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	500	
⑫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300	
⑬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	1,000	
⑭음반판매업자 등록변경신청	〃	500	
⑮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500	
⑯ 체육시설업 신고〈신설2008.3.6〉	1건	30,000	
⑰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신설2008.3.6〉	1건	10,000	
8. 기타 제증명등 원인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1통	300	